

2025년 김해보훈요양원 이용료, 촉탁의비용 안내

□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(20%) 이용료(월 기준)

(단위 : 원)

구 분	장기요양시설급여		본인 부담금			
	1일	30일	급여 (수가의 20%)	비급여 (급식, 간식비)	총 액	
					4인실	1인실
1등급	86,030	2,580,900	516,180	270,000	786,180	1,086,180
2등급	79,810	2,394,300	478,860	270,000	748,860	1,048,860
3~5등급	75,360	2,260,800	452,160	270,000	722,160	1,022,160

※ 비급여 : 식사비 1식 2,500원/간식비 1식 750원/상급 침실료 1인실 10,000원 (1일 기준)

□ 감경·감면대상자 본인부담금(4인실, 월 기준)

(단위 : 원)

구 분		건보 감경 40% (감경12)			건보 감경 60%, 의료급여 (감경8)		
		일반	보훈감면 60%	보훈감면 80%	일반	보훈감면 60%	보훈감면 80%
급여 ①	1등급	309,708	123,883	61,942	206,472	82,589	41,294
	2등급	287,316	114,926	57,463	191,544	76,618	38,309
	3~5등급	271,296	108,518	54,259	180,864	72,346	36,173
비급여②	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
총액 ①+ ②	1등급	579,708	393,883	331,942	476,472	352,589	311,294
	2등급	557,316	384,926	327,463	461,544	346,618	308,309
	3~5등급	541,296	378,518	324,259	450,864	342,346	306,173

① 일 반 인 감경대상자: 국가유공자 유족이 아닌, 일반인 본인 부담금 12%, 8% 해당자

② 60%감면 보훈대상자: 고엽제후유의증, 참전유공자, 무공·보국수훈자, 국가유공자 유족 등

③ 80%감면 보훈대상자: 전상군경, 애국지사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 등

※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감경40%(본인부담금 12%), 감경60(본인부담금8%),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감면 적용되나, 애국지사 본인·배우자, 상이1급 본인,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조사자의 경우 감경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훈감면 추가 적용

▶ 수가 2.3:1 / 2.1:1의 인력구조에 따라 금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□ 계약의 진료비 변경내역: 전년대비 4.5% 수가인상

진료구분	본인부담금				
	일반(20%)	감경(12%)	감경(8%)	의료(8%)	기초(0%)
초진비용(18,410원)	3,680원	2,200원	1,470원	1,470원	0원
재진비용(13,160원)	2,630원	1,570원	1,050원	1,050원	0원